

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9월 27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구덕·김기만·남재경·최호정·  
김경자(강서)·유동균·장인홍·  
김춘수·김광수(노원)·김혜련 의원  
(10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 당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<u>국민안전처장관이</u>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소방청장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수당 등) ----- 위 원에게는 「<u>서울특별시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</u>」에 따라 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